

#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2820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1. 07. 08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(2021.12.31.)
-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
- 수탁기관
 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급식소 위생·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식품 관련 기관, 단체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(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)
- 위탁내용 :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위탁사무 :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·안전 및 영양 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
  - 어린이 급식소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
  - 대상별(어린이, 조리원, 원장 및 교사, 부모) 위생·안전 및 영양교육 지원
  -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운영방식과 위생·안전 및 영양 관리 관련 컨설팅 지원
  - 식단 및 표준 레시피, 가정통신문 등 정보제공
 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등

#### ○ 위탁조건

- 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함
-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김포시에서 제시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을 충실히 수행
- 수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전문 인력 확보

### 4. 검토의견

#### 가. 배경 및 취지

- 본 동의안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의거하여 김포시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후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에 따라 ‘김포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’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,
- 연간 사업비는 총 11억5천5백만원으로 현재 국비 50%, 도비 7.5%, 시비 42.5%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,
  -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·안전 및 영양 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
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안건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